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599

발의연월일: 2022. 9. 28.

발 의 자:기동민·권칠승·김두관

김의겸 • 도종환 • 신정훈

위성곤 • 이수진 • 이정문

임호선 · 조응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소송과 같은 기술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당소송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소송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법인력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는 결국 일반 국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권리보호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소권 남용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부당소송인 규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이러한 부당소송에 대처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조치가 거의 힘들고 사후적 조치도 충분하지 않음. 또한 여러 부당소송을 처리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정립된 실무 처리방안도 현행법상 근거가 없거나 현행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특히, 규칙이나 예규, 처리지침의 변경을 통하여 부당소송 서류의

접수를 제한하는 방안의 경우 자칫하면 사법부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소송구조, 소제기의 방식, 송달, 과태료 등소송법제도 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소송인 규제 제도가 재판청구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하여달성하는 재판제도의 효율성 및 일반 국민의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8조제1항 단서 및 제194조제4항, 안 제219조의2및 제413조의2 신설 등).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소송비용
- 2. 제1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송비용(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한다)
- 3. 제128조제1항에 따른 소송구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 4.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제19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할수 있다.

제2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3조의2(항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항소인이 항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송구조에 관한 적용례) 제1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소권 및 항소권의 남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4항, 제219조의 2, 제248조, 제4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 및 항소를 제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	
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	
助)를 할 수 있다. <u>다만, 패소</u>	
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	<u>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u>
하지 아니하다.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1.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소송비용
<u><신 설></u>	2. 제1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
	공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소
	송비용(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
	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
	한 때에 한한다.)
<u><신 설></u>	3. 제128조제1항에 따른 소송구
	조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u><신 설></u>	4.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생 략) <신 설>

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 기한다.

<신 설>

④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없이 판 결로 소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피고에 대 하여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9조의2(소권 남용에 대한 제 재)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 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 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소장 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 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13조의2(항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 항소인이 항소권을 남용 하여 반복적으로 항소를 제기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 다<u>.</u>